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장 애 인 복 지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판정을 받고 간호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”을 “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한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”을 “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한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44